

2024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<초기>단계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제작 공정 단계별 지원 체제 구축 및 안정화
- 도내 애니메이션 콘텐츠 초기 제작활동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 스타 콘텐츠 발굴 기회 증대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 「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사업내용
 -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자유 소재의 애니메이션 초기단계 제작 지원(3개 과제)
 - 선정과제 국내 콘텐츠 마켓 유통활성화 지원
- 지원규모 : 금90,000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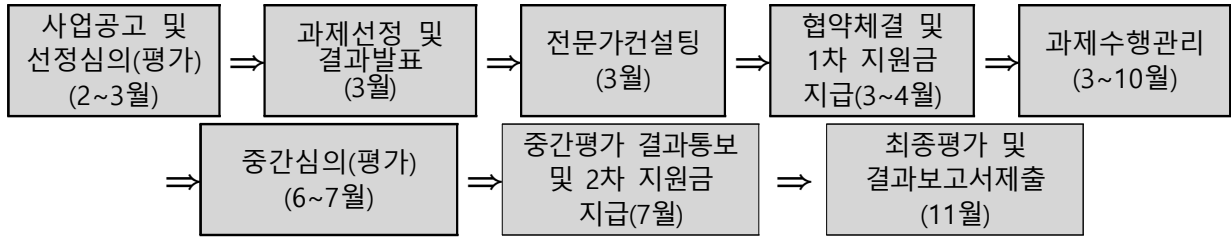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	지원금액	지원과제수	총지원금액
프리프로덕션 지원	30,000천원	3개 과제	90,000천원

신청자격

- 「애니메이션산업법」 제2조,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,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를 두고 있고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업 신고를 필한 ‘애니메이션업자’

※ 도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은 가능하나, 주관기업 본사(또는 지사) 주소지가 제주 특별자치도 소재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함

□ 추진일정



※ 위 일정은 신청서 접수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○ 사업공고

- 공고기간 : 2024. 2. 02.(금) ~ 2. 22(목) 18:00
- 접수기간 : 2024. 2. 19.(월) ~ 2024. 2. 22.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(culture@ofjeju.kr)

○ 선정평가 : 2024. 3월 초 진행

-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
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※ 최종점수는 심의위원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한 후, 평균점수 산정
- ※ 심의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, 최고·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를 산정

○ 선정결과발표

-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사업자 개별통보

○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중 적합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고득점순으로 선정, 자부담 10%(지원금액)을 매칭하여 지원

○ 과제협약기간 : 협약일 ~ 10.31.

○ 과제수행관리

- 전문가 컨설팅 : 선정과제 완성도 증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시행
- 과제 현장점검 2회 이상 시행 : 지원금 적정사용 및 과제 정상 수행 여부 관리 철저

3. 모집분야

항목	내용
지원과제	자유소재의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제작 과정 지원
지원금액	금30,000천원×3개 과제
지원대상	현재 애니메이션 초기 기획(시놉시스, 세계관 구성)이 완료된 작품으로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준비 중인 작품 ※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은 자유이나, 광고&전시영상용 콘텐츠는 제외
신청시 제출자료	사업신청서 지정서류 일체
지원내용	애니메이션 시리즈물, 장편 등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, 콘티&애니메틱스 및 바이블 (아트웍, 디자인 설정집)책자 제작 지원 ※ 바이블책자 : 애니메이션 배경, 캐릭터, 소품 등의 디자인 설정 및 아트웍 책자
과제 제출분량 (필수제출)	① 시나리오(30분 이상) ② 과제작품의 바이블 책자(칼라) : 작품의 세계관, 시놉시스, 캐릭터소개 설명 및 캐릭터, 소품, 배경 등의 디자인 아트웍을 담은 책자 - 피칭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콘텐츠를 포함할 것 ③ 콘티 및 애니메틱스 동영상 파일 : 30분 분량 이상 ④ 최소 3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 (오프닝/엔딩 불포함) ⑤ 지식 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

※ 영상물인 경우 전체분량 중 제작기법, 흥행성, 상업성 등 제작 퀄리티를 어필 할 수 있는 주요 썸과 컷을 선별 발취 제작, 트레일러 제작이 아님

○ 공통사항

- 동영상 파일 제출 시 720P 이상, MP4/H264 코덱 등의 범용 코덱으로 인코딩

4. 지원조건

- 신청과제는 사업기간(협약기간) 내 완성이 가능한 과제일 것
- 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자부담 매칭 필수
-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은 2회 분할지급 : 협약체결 이후 1차(50%), 중간평가 이후 2차(50%) 교부
 - ※ 2차 지원금 지급 조건 : 중간평가 결과 ‘계속’ 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한함
 - ※ 분할 지급률은 변동 가능
- 인건비는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작인력의 직접비만 산정 가능

-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으로, 보수, 일용임금, 기타직 보수 등으로 나뉘며, 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에서 산정 가능
- 참여율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(참여율 100%는 과제 전담인력을 의미함)
- 참여 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, 사업자등록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필수임에 유의
- 대표이사의 참여율은 50% 이하로 하며, 과제책임자는 50% 이상 참여하여야 함
※ 단,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 산정은 불가함
- 지원 선정 확정 후,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% 이상 증액 불가
- 과제참여자의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하며, 외부용역의 과업 내용과 중복일 경우에 중복과업에 대한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

- 컨소시엄의 경우 저작권등 지식재산권 배분 및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(표준계약서 이용 권장) 제출 필수
- 대기업,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은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나, 지원금 사용 불가(인력, 운영 등 현물 매칭으로 참여 가능)
- 협약일 이전 제작이 완료된 완성물을 목표과제 완성 결과물로 허위 제출한 것이 적발되거나 판명될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
-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
- 해외시장 진출을 대비한 외국어버전 제작 시, 공인된 인증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자(대학교수 등)에 감수 후 감수확인서 제출 필수
- 선정 과제는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선정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 완료하고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하는 지정일(15일 이내)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
-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개수 조정 가능
- 과제 선정시 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협약 포기,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 자를 선정 할 수 있음
- ※ 그 밖의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(필독)를 참조할 것

5. 지원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(과제 목표,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우리원의

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
- 동일한 내용(과제 목표,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진흥원 및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
-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가 불가능한 과제인 경우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
-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 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-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 -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, 부적정” 인 경우

6. 신청서제출 및 접수

사업공고

- 공고기간 : 2024. 2. 02.(금) ~ 2. 22(목) 18:00
- 접수기간 : 2024. 2. 19.(월) ~ 2024. 2. 22.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(culture@ofjeju.kr)
- 문 의 처

담당부서	담당자	이메일	전화
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	김영현 책임연구원	culture@ofjeju.kr	064)766-0704

신청서류

[필수] 공통제출서류				
No.	서류명	제출부수	서식	비고
1	과제신청서	각1부	[서식1]	※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
2	심의(평가)위원 추천표	각1부	[서식2]	
3	사업참여 서약서	각1부	[서식3]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각1부	[서식4]	※ 참여인력 전체 자필서명

5	신청자격 자가진단서	각1부	[서식5]	※ 참여기업 동일 제출
6	사업자 부담금 확약서	각1부	[서식6]	
7	사업자등록증 및 애니메이션업 신고필증	각1부	-	※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- 참여기업 포함
8	법인등기부등본 ※ 개인사업자 제외	각1부	-	※ 참여기업 동일 제출
9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각1부	-	※ 참여기업 동일 제출
10	최근 2년간 재무제표 (2022년도~2023년도) ※23년도 미결산시, 직전년도부터 2개년 제출(추후 23년도분 제출)	각1부	-	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종합소득세신고서로 제출 ※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
11	기획서(시놉시스, 세계관, 캐릭터 소개 등)	각1부		

[선택] 선택제출자료			
No.	서류명	제출부수	비고
12	주요 계약서(저작권, 투자, 배급, 편성 등)	각 1부	※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
13	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		

○ 제출방법: 사업안내서 참조

※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 과제 접수 미달 시, 모집 재공고(연장공고)를 실시 할 수 있음

7. 심의(평가)

○ 1차 서류평가

-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(필요시 현장 실사)) ☞ 부적격 신청과제인 경우 개별 고지에정

○ 2차 발표평가

- 사업추진의 전문성,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‘심의(평가)위원회’ 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 심의평가

-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지원과제 선정

- 발표시간 : 신청과제당 30분 이내(15분 발표, 15분 질의응답)

- 발표자료 : 과제계획서와 일치하는 발표용(PT) 자료

- 발 표 자 : 과제책임자

○ 선정기준

-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※ 심의위원별 평가결과를 취합,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하여 총점 및 평점 산출하며, 심의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고·최저점을 포함한 평균점수 산출

-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- 협약 포기,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

○ 결과발표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시

○ 협약체결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↔ 수행기업

8. 결과물 귀속

○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가 귀속함. 다만 아래의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활용권한을 인정함

-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/오프라인 무료사용

- 제주특별자치도 및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
-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시설 운영에 활용(상영관, 전시, 정보실 등)

-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/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
- 시사회 개최 등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

- 완성 후 제출한 스틸컷 및 이미지의 비상업적인 활용 동의(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등)

9. 과제신청 유의사항

○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, 신청 서류 실물 확인을 위해 방문 접수만 허용함

○ 과제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,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,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.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,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

○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

○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시 과제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,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,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
○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
○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

을 지지 않음

-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 -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협약서 내용을 우선함
 -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 -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
 -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및 구성,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
 -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
 -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
 -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
 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 - 협약이전 제작이 완료된 완성물을 과제 완성 결과물로 제출 후 적발되거나 판명 될 경우, 향후 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할 수 있음
 - 기타,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」, 「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」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「사업관리 요령」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 -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」, 「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」, (재)제주 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「사업관리 요령」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
- ※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
2024년 2월 02일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